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3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신설)	7.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으로 한다 제2항 제6호 (신설) 제3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으로 한다. ②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현행과 동일)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8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⑨(신설)	⑨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시하여야 한다._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r>
<tr><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td></tr>
<tr><td rowspan="3">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r>
<tr><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7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1)</td></tr>
</table>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및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1) 앞에 삽입)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별첨 2)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신설) (2) 유동성자산(신설) (3) 비교지수(신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제목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3)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Benchmark) : (KOSPI*57%)+(매경 BP 국공채 1 년지수*43%)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신탁자산의 60% 이하를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KOSPI*57%)+(매경BP 국공채1년지수*43%)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추가)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2)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2)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및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분류
(신설)</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td></tr>
<tr><td rowspan="2">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및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신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및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주식</td><td>60% 이하</td></tr><tr><td>채권</td><td>50% 이하</td></tr></table></td><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UBS 인Best연금</td><td>70% 이상</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td></tr>
<tr><td></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신설)</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table>
<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
<tr><td>주식</td><td>60% 이하</td></tr>
<tr><td>채권</td><td>5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tr>
<tr><td></td><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1) 운용전략</td><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1)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td></tr>
<tr><td></td><td>3. 운용전문인력</td><td>3. 운용전문인력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td>2. 전환절차 및 방법
2)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d>2. 전환절차 및 방법
2)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tr>
</table>

(별첨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및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식부문: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채권부문: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별첨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0% 이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3)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1월 30일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9.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전환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전환형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 (운용 및 투자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 25 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

		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 26 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 (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⑨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

	<⑨ 신설>	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코드</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코드 : 64467</td></tr>
<tr><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td></tr>
<tr><td rowspan="3">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r>
<tr><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td></tr>
<tr><td><신설></td><td>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하나 UBS</td><td>주요투자대상</td><td>주식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able></td></tr>
</table>

		First Class 연금 증권모 투자신 탁(제 1 호)[주식]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다. 전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상품으로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간에 자유로이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략)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도표)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어음 : 40%이하 (생략) 주요투자목적 주요투자전략 주요투자위험	다.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상품으로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간에 자유로이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도표) 주요투자대상: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채권 : 60%이상, 어음 : 40%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주요투자목적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위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표 삭제>

나. 투자제한

<표삭제>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생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9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유동성 자산	10%이하 (단, 대형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또는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신설>	한 (생략,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 : 별첨 참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 별첨 참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삭제> (2) <삭제>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림)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하나 UBS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림삭제>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가.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멀(배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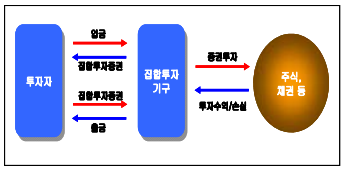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신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로서 노후생활 대비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신설>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신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 전환 (1) (생략)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다. 전환 (1) (생략, 현행과 동일)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4)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6) 연금증권[채권]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6) 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나. 과세 (신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재무정보**(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추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생략,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전환형 **기준가**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전환형, 모자형 **기준가**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table>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주식</td><td>60% 이상</td></tr>
<tr><td>채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잔여재산은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2)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d>90% 이상</td></tr>
<tr><td>유동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td>
</tr>
<tr>
<td></td>
<td>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하며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td>
<td>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90% 이상</td><td>■내재가치가 우량한 대형주 및 시장 주도종목 등에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운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운용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종목 선정으로 장기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td></tr>
</table>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자산총액의 10% 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td>
</tr>
</table>

<table>
<tr>
<td></td>
<td>•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td>
<td>전략 등

<table>
<tr><th>모투자신탁</th><th>투자목적</th><th>투자비중</th></tr>
<tr><td>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d>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내재가치 우량 대형주 및 업종 대표주, 시장주도주 등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td><td>국내 주식에 60% 이상</td></tr>
</table>
</td>
</tr>
<tr>
<td></td>
<td>3. 운용전문인력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td>
<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로서 노후생활 대비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td>
</tr>
</table>

[별첨]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펀드명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투자대상자산 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3.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3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신설) ④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순차적 연번 변경)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현행과 동일)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2. ~ 8.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② ~ ④ 삭제
제25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

		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

산정 및 공고)	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제 1 항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10 항 (신설)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5항 (신설)	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

	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8 항 (신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투자신탁[주식]</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td></tr>
<tr><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신설)</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td></tr>
<tr><td rowspan="3">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투자신탁[주식]</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아이비리그 플러스적립식 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1)</td></tr>
<tr><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able>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1) 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2)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등) (3)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별첨 2) (2)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이하 삭제 (3)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 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3)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모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1) 운용전략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모집합투자기구] (1) 운용전략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신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생략)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생략, 현행과 동일)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투자신탁[주식]</td><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주식]</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신설)</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신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td><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주식</td><td>60% 이상</td></tr><tr><td>채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able></td><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UBS 아이비리그 플러스적립식 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유동성 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주식</td><td>60% 이상</td></tr>
<tr><td>채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tr>
<tr><td></td><td>2.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td><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 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td></tr>
</table>

(별첨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아이비리그 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별첨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3)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 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적용예외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

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전환 기준시간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3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9호 (신설)	9.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제2항 제6호 (신설) 제3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②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제3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3항 삭제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7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

		여야 한다.
	제1항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제1항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제28조의 2 (투자신탁의 전환)	제4항 1. (생략) 15시 경과 후에 (생략) 2. (생략) 15시 경과 후에 (생략) 제11항 (생략)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생략)	제4항 1.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 경과 후에 (생략, 현행과 동일) 2.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 경과 후에 (생략, 현행과 동일) 제11항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경과 후 (생략,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생략)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제 9 항 (신설)	⑨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 (신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제5항 (신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인Best연금[주식혼합] (내용, 제목 추가) 인Best연금[채권](내용, 제목 추가)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주식혼합]: (내용) 모투자신탁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채권]: (내용)모투자신탁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1) 앞에 삽입)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별첨 2)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2)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2)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신설) (2) 유동성자산(신설) (3) 비교지수(신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제목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3)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Benchmark) : 매경 BP 종합채권지수(A-이상)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매경BP 종합채권지수(A-이상)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추가)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2)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3)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	다. 전환 (1)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3)연금증권자투자신탁 [채권]
	(4) 연금증권[주식혼합] 1) 15 시 경과 후에 2) 15 시 경과 후에 (11) (생략)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생략) (도표) 15 시 -(생략)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생략)	(4)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 15 시 30 분 경과 후에 2) 15 시 30 분 경과 후에 (11) (생략, 현행과 같음) 15 시 30 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생략, 현행과 같음) (도표) 15 시 30 분 -(생략, 현행과 같음) 15 시 30 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생략, 현행과 같음)
	(10) 1) 연금증권[채권] 2) 연금증권[주식혼합]	(10) 1) 연금증권자투자신탁 [채권] 2)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1) 연금증권[채권], 연금증권[주식혼합]	11) 연금증권자투자신탁 [채권],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가. 연평균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생략,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td><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분류
(신설)</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모자형</td></tr>
<tr><td rowspan="2">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신설)</td><td>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UBS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나. 투자전략
■ 기본운용방안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시행을 통한 추가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td>
<td>나.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 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90% 이상</td></tr>
</table>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 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td></tr>
</table>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td>
<td>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추이</td>
<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추이 (업데이트)</td>
</tr>
<tr>
<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
<td>2. 전환절차 및 방법
(1) 2)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
<td>2. 전환절차 및 방법
(1) 2)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td>
</tr>
</table>

(별첨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별첨 2)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90% 이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3)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펀드명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3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제2항 제6호 (신설) 제4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②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순차적 연번 변경)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

등)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현행과 동일)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8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4항 삭제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10 항 (신설)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td></tr>
<tr><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td></tr>
<tr><td rowspan="3">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td></tr>
<tr><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9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1)</td></tr>
</table>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1) 앞에 삽입)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별첨 2)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신설) (2) 유동성자산(신설) (3) 비교지수(신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제목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3)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Benchmark) : (KOSPI*25%)+(매경 BP 국공채 1~2 년지수*70%)+(Call 금리×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신탁재산의 30%이하 및 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신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분류**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신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table>
<tr><td></td><td></td><td>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td><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3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td>(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td></tr>
<tr><td></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신설)</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3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tr>
<tr><td></td><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1) 운용전략</td><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6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1)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td></tr>
<tr><td></td><td>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td><td>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able>

(별첨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주요투자대상	국내채권
	투자목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 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별첨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90%이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3)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펀드명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3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신설>	6.모자형(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순차적 연번 변경)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제1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 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제3조 제3항 제1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 17 조 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4항 삭제
제25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10 항 (신설)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

	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신설) - 특수형태: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모자형(자펀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가.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등)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가.투자대상 별첨 2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이하 삭제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 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모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 3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1) 운용전략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1) 운용전략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신설) 나. 환매 (신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

	인하여 (생략)	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KOSPI 수익률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일반사무관리회사 외환펀드서비스㈜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생략)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신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table>
<tr><td></td><td>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신설)</td><td>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td></tr>
<tr><td>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신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td><td>(2) 투자대상
<table><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3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able></td><td>(2) 투자대상
<table><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tr><td>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td></tr>
<tr><td></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신설)</td><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table><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3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tr>
<tr><td></td><td>2. 투자전략</td><td>2. 투자전략</td></tr>
</table>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3. 운용전문인력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별첨 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별첨 2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별첨 3

모집합투자기구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